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37@naver.com

담당 : 박용복 국장

문서번호 시험 2020 - 301호

시행일자 2020. 8. 28.

수 신 교육부장관

참 조 교육시설과장

선 결			지 시	
접	일자		결	
수	시간		재	
	번호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교육시설 안전법」 후속 법령 등 제정에 대한 건의

1. 국가 교육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9년 12월 3일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시설 안전법’))」의 시행에 경하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사를 통하여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이 부각되고 있어 국가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의 대계를 흐트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바 현행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규정과의 법령 부조화로 인한 비효율과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령, 시행규칙과 각종 후속 규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현황

- (1) 「교육시설 안전법」 제13조, 제14조에서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하도록 되어 있음.
- (2) 현행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발주근거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과 「시설물 안전법」으로서,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업무는 설계사의 업무영역인 반면 공용중인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되는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자본, 인력,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영역으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귀부의 ‘학교시설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 제 3장 사전조사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3) 또한 「시설물 안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자는 기술사를 포함하여 역량지수(ICEC)에 따라 종합점수(기술자격+학력+경력+교육)로 관리, 평가하고 있음.

나. 최근 특정 이익단체 주장과 내진성능평가 등의 문제점

- (1) 최근 특정 이익단체에서 “내진성능평가 PQ제도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 전문성 자격부여” 등을 주장하며 마치 기존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업역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음.
- (2) 이는, 성수대교·삼풍백화점붕괴사고 후 25년동안 1,2종 시설물의 점검·진단에서 부실용역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엄격한 등록기준(분야당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사를 포함한 특급 2명, 고급, 중급 등 8명이상, 진단장비 13종

보유(건축) 기준) 등과 전문적인 교육, 용역 성과품의 법적 평가와 행정처분, 그리고 우리 협회 회원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력과 노력에 따른 것임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3) 현재 ‘매뉴얼’ 1.6 책임구조기술자 조항에 ‘비선형해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과대 해석하여 발주시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4) 최근 수년간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의 배출은 2015년 15명, 2016년 26명, 2017년 12명, 2018년 47명, 2019년 52명 등 6년간 168명(건축사의 경우 2017년 607명, 2018년 752명, 2019년 1,090명, 2020년 1,306명 배출)으로 「교육시설 안전법」,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5)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2018년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구조기술사 1명이 국립대 8곳, 259개동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현재에도 자격증만 갖고 선형·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많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건축구조기술사는 고액연봉 요구, 다른 구조기술자가 대신해준 비선형해석의 날인 거부 등으로 진단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6) 현재 선형·비선형해석을 포함한 구조해석 분야는 「시설물 안전법」상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 하도급을 성행하고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의 입장에서조차 저가의 불법 하도급은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님.

다. 협회 의견 및 건의

(1) 「교육시설안전법」상의 내진설계는 「건축법」등을 따를 수 있으나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는 현재 공용중인 건축시설물의 상태, 안전

성등 제반 특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업무영역으로 1인의 건축구조기술사가 책임, 수행할 수 없음.

(2) 현재 「시설물 안전법」상 비선형해석 등 ‘구조계산’의 하도급이 불법으로 되어있으나 「교육시설 안전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여 건축구조기술사등 구조안전기술자의 책임과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적정대가를 받도록 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3)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발주시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자의 역량지수(ICEC)를 근거로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에 따라 평가하여 많은 역량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